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 | |
|------|--------------|---|
| 제정 | 1981. 7. 1 | 규칙 제 12호 |
| 개정 | 1981. 8. 10 | 규칙 제 38호 |
| | 1982. 9. 9 | 규칙 제 77호 |
| | 1983. 9. 2 | 규칙 제 98호 |
| | 1984. 12. 4 | 규칙 제 142호 |
| | 1985. 3. 8 | 규칙 제 147호 |
| | 1986. 4. 16 | 규칙 제 183호 |
| | 1986. 11. 22 | 규칙 제 197호 |
| | 1988. 1. 27 | 규칙 제 232호 |
| | 1988. 10. 25 | 규칙 제 272호 |
| | 1989. 8. 14 | 규칙 제 303호 |
| | 1990. 6. 9 | 규칙 제 333호 |
| | 1990. 7. 16 | 규칙 제 340호 |
| | 1991. 1. 5 | 규칙 제 362호 |
| | 1991. 6. 12 | 규칙 제 399호 |
| | 1991. 6. 29 | 규칙 제 401호 |
| | 1991. 8. 30 | 규칙 제 415호 |
| | 1991. 10. 11 | 규칙 제 419호 |
| | 1992. 1. 31 | 규칙 제 433호 |
| | 1992. 5. 21 | 규칙 제 446호 |
| | 1992. 6. 15 | 규칙 제 455호 |
| | 1993. 1. 15 | 규칙 제 487호 |
| | 1993. 7. 12 | 규칙 제 510호 |
| | 1993. 12. 27 | 규칙 제 538호 |
| | 1994. 2. 19 | 규칙 제 553호 |
| | 1995. 1. 11 | 규칙 제 605호 |
| | 1995. 5. 13 | 규칙 제 621호 |
| | 1995. 10. 24 | 규칙 제 636호 |
| | 1996. 1. 18 | 규칙 제 641호 |
| | 1996. 5. 28 | 규칙 제 651호 |
| | 1996. 12. 27 | 규칙 제 676호 |
| | 1998. 4. 30 | 규칙 제 705호 |
| | 1998. 12. 1 | 규칙 제 728호 |
| | 1999. 9. 20 | 규칙 제 751호 |
| | 1999. 12. 30 | 규칙 제 762호 |
| | 2007. 10. 10 | 규칙 제 925호 |
| | 2008. 6. 16 | 규칙 제 93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
| 전문개정 | 2009. 1. 7 | 규칙 제 951호 |
| 일부개정 | 2011. 4. 15 | 규칙 제1009호(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
| 일부개정 | 2014. 7. 11 | 규칙 제1076호 |
| 일부개정 | 2015. 12. 11 | 규칙 제1120호(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
| 일부개정 | 2016. 9. 8 | 규칙 제1135호(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
| 일부개정 | 2017. 11. 30 | 규칙 제1172호 |
| 일부개정 | 2018. 7. 31 | 규칙 제1184호(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
| 일부개정 | 2021. 4. 26 | 규칙 제1251호 |
| 일부개정 | 2024. 1. 29 | 규칙 제1294호 |
| 일부개정 | 2025. 3. 14 | 규칙 제1317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11〉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7. 11〉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그밖에 인사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3. 삭제 〈2014. 7. 11〉
4. 삭제 〈2014. 7. 11〉
5. 삭제 〈2014. 7. 11〉
6. 삭제 〈2014. 7. 11〉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안전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1〉

제2장 시험

제5조 삭제 <2014. 7. 11>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1>

제7조(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시험 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과 인터넷 업무처리에 드는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1>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을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과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과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30, 2024. 1. 29>

1. 삭제 <2024. 1. 29>
2. 삭제 <2024. 1. 29>
3. 삭제 <2024. 1. 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 7. 11, 개정 2017. 11. 30, 2021. 4. 26, 2024. 1. 29, 2025. 3. 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제8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4. 7. 11, 2017. 11. 30>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응시나이)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7. 11, 2024. 1. 29>

1. 삭제 <2024. 1. 29>
2. 삭제 <2024. 1. 29>

제10조 삭제 <2014. 7. 11>

제11조(응시 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5항과 1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응시 나이를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응시 나이를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

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나이·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1>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 예정자의 응시 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셈하기 시작한다. <개정 2014. 7. 11>

제13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30>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 7. 11>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다른 시험위원의 3분2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11>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 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30, 개정 2024. 1. 29>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1>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과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5조 삭제 <2014. 7. 11>

제16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검정한다. <개정 2014. 7. 11>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위원회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 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7. 11, 2016. 9. 8, 2017. 11. 30>

[제목개정 2014. 7. 11]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1. 4. 26>

② 「국가기술자격법」 등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별표 10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에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

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경우는 제외한다)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4. 7. 11>

③ 삭제 <2021. 4. 26>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1. 4. 26>

제18조(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5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 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의 임용 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4. 15, 2014. 7. 11>

1. 삭제 <2017. 11. 30>

2. 삭제 <2017. 11. 30>

3. 삭제 <2017. 11. 30>

② 삭제 <2014. 7. 11>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 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의 구분에 따른 임용 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예정 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 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과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1. 4. 15, 2014. 7. 11>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졸업자를 경력경쟁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와 임용 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5, 2014. 7. 11)

1. 경력경쟁 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2와 별표3 및 별표13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2. 임용 예정 직렬은 별표2와 별표3 및 별표13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일 것
3. 임용 예정 직급

| 출신학력별 | 임용예정 직급 |
|--------------|-------------|
| 대학을 졸업한 사람 | 6급, 7급, 연구사 |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 7급, 8급, 지도사 |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9급 |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와 별표 14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4. 15, 2014. 7. 11, 2021. 4. 26〉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 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1. 4. 15, 2014. 7. 11〉

⑦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하는 경우 임용 예정 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1〉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2]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3]와

같다. <신설 2014. 7. 11, 개정 2017. 11. 30>

⑨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 7. 11>

[제목개정 2014. 7. 11]

제18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 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 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 위원 : 민간 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

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4. 1. 29]

제19조(특수 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 여부”로,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경력경쟁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개정 2014. 7. 11>

③ 삭제 <2021. 4. 26>

[제목개정 2025. 3. 14]

제20조(특수 직무 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 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 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 4. 15, 2014. 7. 11>

- 1. 특수 직무 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 2. 특수 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과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 3. 특수 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14. 7. 11>

[제목개정 2014. 7. 11]

제21조(경력경쟁 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제1항제3호와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4. 15,

2014. 7. 11>

[제목개정 2014. 7. 11]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 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4. 7. 11>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11. 4. 15>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1. 4. 15>

⑤ 삭제 <2021. 4. 26>

⑥ 삭제 <2021. 4. 26>

[제목개정 2014. 7. 11]

제3장 임용

제23조(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 희망기관 또는 근무 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30>

제24조(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 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5조(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1조에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 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 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실무수습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1>

제26조(5급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과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 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과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4. 7. 11>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앞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4. 26>

제27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4. 7. 11>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후 일반직 공무원임용된 경우에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1, 2017. 11. 30, 단서신설 2021. 4. 26>

제27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1. 4. 26]

제28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 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 7. 11, 2017. 11. 30>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9조(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① 시장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하급자 및 동료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9]

제30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21. 4. 26>

[제목개정 2021. 4. 26]

제30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4. 1. 29>

[본조신설 2021. 4. 26]

제30조의3(실적 가산점) ① 지방5급 이하 일반직, 연구·지도직 등 공무원은 해당 근무성적평정 기간 내 실적가산점 부여기준에 해당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실적가산점 심의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부여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하여 심의 후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실적가산점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및 배점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실적 가산점의 합은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실적가산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4. 26]

제31조(겸임의 경우 겸임 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과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4. 7. 11>

제32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시는 8급 이상, 동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33조(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11]

부칙 <2009. 1. 7 규칙 제951호 전문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부칙 <2011. 4. 15 규칙 제1009호,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11 규칙 제10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1 규칙 제1120호,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8 규칙 제113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0 규칙 제11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1. 4. 26 규칙 제12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 29 규칙 제12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별표 4, 별표 6, 별표 1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3531호)」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

터 적용한다.

부칙 <2025. 3. 14 규칙 제13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4. 7. 11>

각종 시험 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

| 구분 | 구비서류의 종류 | 비 고 |
|----|--------------------------|---|
| 1 | 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 기재) | 시·구, 읍·면·동장 발행 |
| 2 | 복무확인서 1부 | 현역군인에 한함 |
| 3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 4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
| 5 | 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 대상자에 한함 |
| 6 |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
| 7 |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비고 :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3차 시험(면접시험)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외에 추가적으로 응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21. 4. 26>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
(제18조제4항, 제5항 및 제22조제1항 관련)

| 직렬 | 계급 | | 연구관·연구사 |
|------|------|---|---|
| | 직렬 | 직류 | |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 |
| | | 미술 |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
| | | 국악 |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
| | | 국어 |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
| 편사연구 | 편사 |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 |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
| 공업연구 | 기계 |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 | 전기 |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전자 | | |
| | 금속 |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 섬유 |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 화학 |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 | 산업경영 |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
| | 물리 |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직렬 | 계급 | | 연구관·연구사 |
|-------|------|---|--|
| | 직류 | | |
| 농업연구 | 작물 |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 | 농업환경 | |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 | 작물보호 | |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 농업경영 | |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
| | 산업곤충 | |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
| | 원예 |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생명유전 | |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 | 농촌생활 | |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
| | 축산 | |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농공 | |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
| 농식품개발 | |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 |

| 직렬 | 계급 | | 연구관 · 연구사 |
|--------|------|---|---|
| | 직류 | | |
| 녹지연구 | 임 | 업 |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
| | 조 | 경 | |
| 수의연구 | 수 | 의 |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해양수산연구 | 해양환경 | |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 수산자원 | |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 수산양식 | |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 수산공학 | |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수산가공 | |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 수산경제 | |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
| 보건연구 | 의 | 학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
| | 약 | 학 |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
| | 공중보건 |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 환경연구 | 환 | 경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렬 | 계급 | | 연구관·연구사 |
|--------|------|--|--|
| | 직류 | | |
| 시설연구 | 토 목 | |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건축 | |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
| 방재안전연구 | 안전관리 | | 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
| | 재난관리 | | 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3] <개정 2024. 1. 29>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

(제18조제4항, 제5항 및 제22조제1항 관련)

| 직렬 | 계급 | | 지 도 관 | 지 도 사 |
|------|---------------------------------|--|--|-------|
| | 직렬 | 직류 | | |
| 농촌지도 | 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
| | | 농촌생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사람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
| 어촌지도 | 어 촌 |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

비 고 : 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자는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별표 4] <개정 2024. 1. 29>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7조제2항, 제19조 관련)

| 직렬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직류 | 직류 | |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 사 서 | 사 서 | 사 서 | 1·2급 정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속 기 | 속 기 | 속 기 | 한글속기 1급 | 한글속기 1·2급 | 한글속기 1·2·3급 |
| 수 의 | 수 의 | 수 의 | 수의사 | 수의사 | |
| 의 무 | 일반의무 | 의사, 한의사 | | | |
| | 치 무 | 치과의사 | | | |
| 약 무 | 약 무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 간 호 |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 간호조무사 |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 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 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 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 |
| | | 선박항해 |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
| | | 선박기관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 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 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 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

| 직렬 \ 직류 | | 계급 | | |
|---------|------|---|--|--|
|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항 공 | 일반항공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
| | 조 종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
| | 정 비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 시 설 | 지 적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기능사(지적)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 위 생 | 위 생 | | 위생사 영양사 | 위생사 영양사 |
| | 사 역 | | 영양사 | 영양사 환경기능사 |
| 조 리 | 조 리 |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
| 운 전 | 운 전 | | |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 2. 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4의2] 삭제 <2021. 4. 26>

[별표 5] <개정 2024. 1. 29>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 계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 기술사 |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 기사(3년), 산업기사(6년) |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 회 입상자 (2년) |

2. 삭제

비고

1.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 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6] <개정 2024. 1. 29>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전 산 | 전 산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 업 기 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 | 데이터 |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
| 공 업 | 일반기계 |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 | 농업기계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 업 기 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레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 | 기계운전 |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 업 기 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톨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레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조 선 |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
| | 일반전기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 전 자 |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
| | 원 자 력 |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
| | 금 속 |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
| | 섬 유 |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
| | 일반화학 |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 | 자 원 |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농 업 | 일반농업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식물검역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
| | 축 산 |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 | 생명유전 |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
| 녹 지 | 조 경 | 기술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
| | 산림자원 |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
| | 산림보호 |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
| | 산림이용 | 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잠수 |
| | 일반수산 |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어 로 |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
| | 일반선박 |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
| | 선박항해 |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
| | 선박기관 |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
| | 해양교통 시 설 |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
| 보 건 | 보 건 |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 환 경 | 일반환경 |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수 질 | 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
| | 대 기 | 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
| | 폐 기 물 | 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
| 항 공 | 일반항공 | 기술사 : 항공기관, 항공기계 기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
| | 정 비 | |
| 시 설 | 도시계획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
| | 일반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 수도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 농업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건축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능장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 기능사 : 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 지 적 축 지 |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
| |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 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
| | 디자인 |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응용, 웹디자인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 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 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
| 방송통신 | 통신사 |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
| | 통신기술 |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 처리 |
| | | 전송기술 |
| | 전자통신 기 술 |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응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조 리 | 조 리 | 기능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
| | | 기능사 : 환경기능사 |
| 위 생 | 사 역 | 기능사 : 환경기능사 |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 | |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
 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 직렬 | 계급 |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직렬 | 직류 | | | | | |
| 행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4) | 변리사 | | | | |
| | | 법무행정 | | | | | |
| | 재경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감정평가사 | | | |
| | | 국제통상 |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 감정평가사(3) | | | |
| | 노동 | 변호사 | 공인노무사(3) | 공인노무사 | 직업상담사1급 | 직업상담사2급 | |
| | |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 직업상담사1급 (6) | 직업상담사1급 (3) | 직업상담사2급 (3) | | |
| | 문화홍보 | 변호사 | | | | | |
| 기업행정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감정평가사 | 세무사 | | | |
| |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 세무사(3) | | | | | |
| 감사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감정평가사 | | | |
| |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 세무사(3) 감정평가사(3) | | | | | |
| 세무지방세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 | | |
| | 공인회계사(4) 세무사(7) | 세무사(3) | | | | | |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변호사 | | | |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 | 사회복지사 1급 (3)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
| | 사회복지사 1급 (7) | | | | | | |
| 전산 | 전산 데이터 |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9)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6)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3)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
| | | | | | | | |
| 사서 | 사서 | 1급 정사서(5)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 2급 정사서(3)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렬 | 직류 | 계급 | | | | |
|------|-------|---|---|--|--------------------------------------|--------------------------------------|
| |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공 업 | 일반전기 | | | 무대조명전문인1급 | 무대조명전문인2급 | 무대조명전문인3급 |
| | 일반기계 | | |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
| | 원 자 력 |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 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 | |
| 농 업 | 축 산 | 수의사(7) | 수의사(3) | 수의사 | 가축인공수정사 | |
| 수 의 | 수 의 | 수의사(7) | 수의사(3) | 수의사 | |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 | |
| | 일반선박 |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1급 항해사(3) |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
| | 선박기관 | 1급 기관사(3) |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
| 보 건 | 보 건 |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 보건교육사3급 |
| | 방 역 |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 수의사 약사 간호사(3) | 간호사 |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위생사(12) 영양사(12) | 위생사(8) 영양사(8) | 위생사(5) 영양사(5) | 위생사(2) 영양사(2) | 위생사 영양사 |

| 직렬 | 계급 |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직렬 | 직류 | | | | |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관리사(12) 안경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안경사(8) 방사성동위 원소 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안경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 의 무 | 일반의무 | | 의사(2) 한 의사(2) | | | | |
| | 치 무 | | 치과의사(2) | | | | |
| 약 무 | 약 무 | | 약사(7) 한약사(7) | 약사(3) 한약사(3) | 약사 한약사 | | |
| 간 호 | 간 호 | | 조산사(12) 간호사(12) | 조산사(6) 간호사(6) | 조산사(3) 간호사(3) | 조산사 간호사 | |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 | | | 간호조무사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 조산사(12) 간호사(12) | 조산사(6) 간호사(6) | 조산사(3) 간호사(3) | 조산사 간호사 | |
| 환 경 | 일반환경 | | 의사(2) | 수의사(3) | 수의사 | 위생사(2) | 위생사 |
| | 수 질 | | 수의사(7) | 약사(3) | 약사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
| | 대 기 | | 약사(7) | 위생사(8) | 위생사(5) | | |
| | 폐 기 물 | |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 | |
| 항 공 | 일반항공 |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 |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렬 | 계급 |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직류 | | | | | | |
| 항 공 | 조 종 |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 사업용조종사 | 자가용조종사(3) | 자가용조종사 | |
| | 정 비 | |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
| 시 설 | 건 축 | |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12) |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9) |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6) |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3) |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
| | 디 자 인 | | 건축사(5) | 건축사 | | | |
| 속 기 | 속 기 | | | | 한글속기 1·2급(5) | 한글속기 1·2·3급(2) | 한글속기 1·2·3급 |
| 위 생 | 위 생 | | | | 위생사(5), 영양사(5) | 위생사(2), 영양사(2) | 위생사, 영양사 |
| | 사 역 | | | | 영양사(5) | 영양사(2) | 영양사 |
| 운 전 | 운 전 | | | | | |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6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6의2] <개정 2025. 3. 14>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8조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 등급 | 자격기준 |
|--------------|----------|--|
| 시간선택제 임기제 | 가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라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마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한시 임기제 | 5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6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7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8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9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 등급 | 자격기준 |
|------------------|----------|---|
| 시간 선택제 임기제 | 가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라급 |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마급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한시 임기제 | 5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6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7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8호 |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9호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 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 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 등급 | 자격기준 |
|--------------|----------|--|
| 시간 선택제임기제 | 가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라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
| | 마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 한시임기제 | 5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6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7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 8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
| | 9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6의3] <신설 2017. 11. 30>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8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 등급 | 자 격 기 준 |
|-----------|----------|--|
| 전문 임기제 | 가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 등급 | 자 격 기 준 |
|-----------|----------|---|
| 전문 임기제 | 가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 등급 | 자 격 기 준 |
|-----------|----------|--|
| 전문 임기제 | 가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 7] <개정 2021. 4. 2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 직렬 | 직류 | 계급 | |
|------|------|---|---|
| | | 연구관 | 연구사 |
| 공업연구 | 기계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
| | 전기 | 기술사(방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
| | 전자 |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작용용) |
| | 금속 |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
| | 섬유 | 기술사(섬유, 의류) | 기사(섬유, 의류) |
| | 화학 | 기술사(화학, 세라믹, 식품) | 기사(화학약품제조, 화학, 식품, 화학분석) |
| | 화학 | | |
| | 산업경영 |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
| | 물리 |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
| | 농업연구 | 작물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
| 농업환경 |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
| 작물보호 |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
| 산업곤충 | | |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
| 원예 |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
| 생명유전 | |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 | | | |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렬 | 직류 | 계급 | |
|--------|-----------|---|--|
| | | 연 구 관 | 연 구 사 |
| 농업연구 | 농촌생활 | 기술사(섬유,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 기사(섬유,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
| | 축 산 |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
| | 농 공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세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업토목,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캐드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
| | 농 식 품 개 발 |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 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
| 녹지연구 | 임 업 | 기술사(조정, 종자, 산림, 농화학) | 기사(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
| | 조 경 | | |
| 수의연구 | 수 의 | 기술사(축산) 수의사(7) | 기사(축산) 수의사 |
| 해양수산연구 | 해양환경 |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
| | 수산자원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
| | 수산양식 |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 | 수산공학 | 기술사(해양, 어로) |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
| | 수산가공 |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 | 수산경제 |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 보건연구 | 의 학 |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
| | 약 학 |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직렬 | 계급 | | 연구관 | 연구사 |
|--------|------|---|---|-----|
| | 직렬 | 직류 | | |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 |
| 환경연구 | 환경 |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 |
| 시설연구 | 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 | 건축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 방재안전연구 | 안전관리 | | 기사(방재) | |
| | 재난관리 | | 기사(방재) | |

-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 직렬 | 계급 | | 지 도 관 | 지 도 사 |
|------|--|--|---|---|
| | 직렬 | 직류 | | |
| 농촌지도 | 농 | 업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 업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
| | | 업 | 기술사(생사) |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
| | | 예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 산 |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
| | | 위생 | 기술사(축산) 수의사(7) | 기사(축산) 수의사 |
| | 사회 | 평생교육사 1급 |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 |
| | 기계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 |
| | 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 |
| 농촌생활 |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 | |
| | | | 어 | 촌 |

-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8] <개정 2021. 4. 26>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2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 직렬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직류 | | |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 전 산 | 전 산 | 데이터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
| | 데이터 | | | | |
| 사 서 | 사 서 | | 1급 정사서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속 기 | 속 기 | | 한글속기 1급 | 한글속기 1·2급 | 한글속기 1·2·3급 |
| 공 업 | 일반기계 농업기계 |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퀘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퀘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사 |
| | | | | | |
| |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퀘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 | |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렬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직렬 | 직류 | | | |
| 공 업 | 일반전기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 |
| | 전자 |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 |
| | 원자력 |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 | |
| | 금속 |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
| | 섬유 |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 |
| | 일반화공 |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
| 공 업 | 가스 | 기술사(화공안전) |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 |
| | 자원 |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 |
| 농 업 | 일반농업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
| | 식물검역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 |

| 직렬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직류 | | | | |
| 농업 | 축산 |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 기사(축산, 식품) |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 |
| | 생명유전 |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산업기사(종자, 식품) | |
| 녹지 | 산림자원 |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 |
| | 산림보호 |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 |
| | 산림이용 | 기술사(산림) | 기사(산림, 임산가공) |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 |
| | 조경 |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 |
| 수의 | 수의 | 수의사 | | |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 |
| | 일반수산 | | | | |
| | 어로 | | | | |
| | 해양교통시설 | | | | |
| | 일반선박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 |
| | 선박항해 |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 |
| | 선박기관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 |
| 보건 | 보건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 |
| 보건 | 방역 |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 간호사 | | |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 | 계급 | | |
|------|-------|--|---|---|
| 직렬 | 직류 | 5급이상 | 6·7급 | 8·9급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
| 위 생 | 위 생 | | 위생사 영양사 | 위생사 영양사 |
| | 사 역 | | 영양사 | 영양사 환경기능사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 응급구조사2급 |
| 의 무 | 일반의무 | 의사, 한의사 | | |
| | 치 무 | 치과의사 | | |
| 약 무 | 약 무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 간 호 | 간 호 | | 간호사, 조산사 | |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 간호조무사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 간호사, 조산사 | |
| 환 경 | 일반환경 |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 | 수 질 |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
| | 대 기 |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
| | 폐 기 물 |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
| 항 공 | 일반항공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

| 직렬 | 직류 | 계급 | | |
|----|--------|---|---|---|
|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항공 | 조종 | 운송용조종사 |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 자가용조종사 |
| | 정비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산업기사(항공) |
| 시설 | 도시계획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 |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
| | 일반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수도토목 | | | |
| | 농업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건축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 지적 |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 측지 |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 교통시설 |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도시교통설계 | | | |
| | 디자인 |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렬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직렬 | 직류 | | | |
| 방송통신 | 통신사 |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술 |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계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
| | 통신사 | | | | |
| | 통신기술 | | | | |
| | 전송기술 | | | | |
| 조리 | 조리 | | 조리기능장 |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계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방재)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 |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 |
| 운전 | 운전 | | |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

-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9] 삭제 <2021. 4. 26>

[별표 10] <개정 2021. 4. 26>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7조제2항 관련)

1. 행정·보건의무직군 분야의 해당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 구 분 | 6·7급 | | 8·9급 | |
|---------------|--|------------------------------------|--|----|
| 가산대상 자 격 증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비고 :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중 행정직군 분야의 해당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별표 1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0 2.연구·기술직(지도직 포함)의 가산 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연구·기술직(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 구 분 | 6·7급, 연구사, 지도사 | | 8·9급 | |
|---|----------------|------|--------------------|-----|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 | | | |

[별표 11] <개정 2024. 1. 29>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7조제2항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 직 렬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 행 정 | 일반행정 | — | 변 호 사 |
| | 법무행정 | — | 변 리 사 |
| | 재 경 | — | 변 호 사 |
| | 국제통상 | —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
| | 노 동 |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 변 호 사 공인노무사 |
| | 문화홍보 | — | 변 호 사 |
| | 감 사 | —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
| | 기업행정 | —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
| 세 무 지 방 세 | —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 |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 | 변 호 사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 | 변 호 사 |
| 전 산 전 산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산업기사 자격증가산 비율 적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 작전문가 | |
|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 | |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 |
|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 | | |
| 공 업 일반기계 |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 |

| 직 렬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공 업 농업기계 | <p>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 |
| 기계운전 | <p>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p> | <p>산업기사 자격증가산 비율 적용: 철도교통 안전관리자</p> |

| 직 렬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공 업 기계운전 |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증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레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급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
| 조 선 |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 |
| 일반전기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 전 자 |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 기 능 장 : 관리 기 사 :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 산업기사 : 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 |
| 원 자 력 |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 기사자격증 가 산 비 율 적용 : 원자 로조종감독 자, 핵연료 물 질취급감 독자, 방사 성동위원소 취급자(특 수, 일반),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 자 로 조 종 사, 핵연료 물 질취급자 |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공 업 | 금 속 |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 |
| | 섬 유 |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 |
| | 일반화공 |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
| | 자 원 |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 |
| 농 업 | 일반농업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
| | 식물검역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 |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농 업 | 축 산 |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가축인공수정사 |
| | 생명유전 |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 녹 지 | 산림자원 |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
| | 산림보호 |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
| | 산림이용 |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 |
| | 조 경 |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능사 : 잠수 | |
| | 일반수산 |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 관리사 |
| | 어 로 |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 |
| | 해양교통 시설 | 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 |
| 보 건 | 보 건 |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 과의사, 수 의사, 약사, 한약사, 방 사성동위원 소취급자 (특수, 일 반), 방사선 취급감독 자, 응급구 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보 건 | 보 건 |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 병리사, 보 건의료정보 관리자, 방 사선사, 간 호사, 조산 사, 물리치 료사, 치과 기공사, 치 과위생사, 작업치료 사, 위생사, 영양사, 응 급구조사2 급, 보건교 육사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 교육사3급 |
| | 방 역 |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 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 병리사, 보 건의료정보 관리자, 간 호사, 위생 사, 응급구 조사 2급 |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기술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사 |
| 환경 | 일반환경 |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

| 직 렬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환 경 수 질 |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
| 대 기 |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
| 폐 기 물 |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시 설 도시계획 |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p> <p>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
| 일반토목 |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 |
| 수도토목 |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 |
| 농업토목 |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 |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시 설 | 건축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건축사 |
| | 측지 |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 |
| | 교통시설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 |
| | 도시교통시설 | 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 |
| 디자인 |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건축사 |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 |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방재통신 | 통신사 |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 |
| | 통신기술 |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 | 전송기술 |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 | 전자통신기술 |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 |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공업연구 | 기계 |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 |
| 농촌지도 | 농업기계 |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 |
| 공업연구 | 전기 |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 |
| | 전자 |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 |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공업연구 | 금 속 | <p>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 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 |
| | 섬 유 | <p>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 |
| | 화 공 | <p>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 능 장 : 위험물, 가스</p> | |
| | 화 학 | <p>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 |
| 산업경영 | <p>기 술 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p> <p>기 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p>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 | |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공업연구 | 물 리 |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 |
| 농업연구 | 농식품 개발 |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영양 사, 위생사 |
| | 작 물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
| 농촌지도 | 농 업 |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
| 농업연구 | 원 예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농촌지도 | 원 예 |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 |
| 농업연구 | 농업환경 |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 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 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 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 |
| | 산업곤충 | 기 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 |
| 농촌지도 | 잠 업 | | |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농업연구 | 작물보호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
| | 생명유전 |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 | 농촌생활 | 기 술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
| 농촌지도 | 농촌생활 | | |
| 농촌지도 | 농업경영 |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 |
| 농촌지도 | 농촌사회 |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농업연구 | 농 공 |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
| 농업연구 | 축 산 | <p>기술사 : 축산, 식품</p> |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가축인공수정사</p> |
| 농촌지도 | 축 산 | <p>기사 : 축산,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식품</p> | |
| 농지연구 | 임 업 | <p>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p> | |
| | 조 경 | <p>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 |
| 농촌지도 | 임 업 | <p>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p> | |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수의연구 | 수의 | 기술사 : 축산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
| 농촌지도 | 가축위생 | 기사 : 축산 산업기사 : 축산 | |
| 해양수산 연구 | 해양환경 수산자원 |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 |
| 어촌지도 | 어촌 |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 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 |
| 해양수산 연구 | 수산양식 |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 |
| | 수산공학 |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 |
| | 수산가공 |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식품 | |
| 보건연구 | 의학 | -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
| | 약학 | -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약 사, 한의사, 한약사 |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p>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p> <p>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p> <p>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p> <p>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p> |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p> |
| 환경연구 | 환경 | <p>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시설연구 | 토 목 |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 |
| 농촌지도 | 농업토목 |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 |
| 시설연구 | 건 축 | <p>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
| 방재안전 연구 | 안전 관리 | 기 사 : 방재 | |
| | 재난 관리 | |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12] <개정 2021. 4. 26>

경력경쟁 임용계급 해당 경력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 임용예정직급 | | 2급· 연구관 지도관 | 3급· 연구관 지도관 | 4급· 연구관 지도관 | 5급· 연구관 지도관 | 6급· 연구사 지도사 | 7급· 연구사 지도사 | 8급 | 9급 |
|---------------------|--|---|---------------------|---------------------|-------------------|-------------------|-------------------|-----------------|-----------------|
| 직무분야 | | 경 찰 공 무 원 | 경 무 관 | 총 경 | 경 정 | 경 감 경 위 | 경 사 | 경 장 | 순 경 |
| | | 소 방 공 무 원 | 소 방 감 | 소 방 정 | 소 방 령 | 소 방 경 소 방 위 | 소 방 장 | 소 방 교 | 소 방 사 |
| | | 군 인 | 대 령 | 중 령 | 소 령 | 대 위 | 중 위 | 소 위 위 위 사 | 상 사 중 사 사 |
|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포함) | 대학(교육대학·진 문대학 포함)교원 | 교 수 (3년이상) | 교 수 | 부교수 | 조교수 | 전 임 강 사 | | | |
| | 초·중·고등학교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 | 24호봉 이 상 | 16호봉 이 상 | 12호봉 이 상 | 11호봉 이 하 | | |
| | 사립학교교원 |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 | 17호봉 이 상 | 11호봉 이 상 | 7호봉 이 상 | 6호봉 이 하 | | |
| | 사립학교교원 |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 | | 19호봉 이 상 | 13호봉 이 상 | 9호봉 이 상 | 8호봉 이 하 | | |
| | 관 사 · 검 사 | 9호봉 이 상 | 6호봉 이 상 | 4호봉 이 상 | | | | | |
| | 기 능 직 공 무 원 | | | | | 6급 이 상 | 7급 | 8급 | 9급 이 하 |
| |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지 자 학 위 소 지 자 |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 박사학위 소지자 | | | | |
| | 관 련 직 무 분 야 민 간 근 무 경 력 자 |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 | | | 6년 | 3년 | 3년 | 3년 |

- 비 고 : 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 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여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 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별표 13] <개정 2021. 4. 26>

임용예정 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8조제4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 직 렬 | 직 류 | 관 련 학 과 |
|--------|----------------------------|---|
| 공 업 | 일반기계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
| | 원 자 력 |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
| | 조 선 |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
| | 일반전기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
| | 섬 유 |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
| | 일반화학 |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
| | 금 속 |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
| | 자 원 | 광산, 자원개발, 지질 |
| 농 지 | 산림자원 |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
| | 산림보호 | 임업, 임학, (농)생물학 |
| | 산림이용 |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
| 농 업 | 일반농업 |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
| | 축 산 |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
| 수 의 | 수 의 | 수의학 |
| 환 경 | 일반환경 |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
| | 일반수산 | |
| | 일반선박 |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
| | 선박항해 | 항해(학) |
| | 선박기관 |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
| | 어 로 |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
| 해양교통시설 |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 |
| 시 설 | 일반토목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
| | 건 축 | 건축(건축설비) |
| | 지 적 |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
| | 측 지 | |
| 방송통신 | 통 신 사 |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
| | 통신기술 | |
| | 진송기술 | |
| | 전자통신기술 | |
| 항 공 | 일반항공 |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
| | 조 중 | 항공운항학 |
| | 정 비 |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
| 약 무 | 약 무 |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
| 보 건 | 보 건 |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중·정비·약무·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 직 렬 | 관 련 학 과 |
|---------|--|
| 농 촌 지 도 |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
| 어 촌 지 도 |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

[별표 14] <개정 2021. 4. 26>

경력경쟁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 경력 연수

(제18조제5항 관련)

| 구분 | 계급 | 3급 | 4급 | 5급 | 6급 이하 |
|----------------|----|-----|----|----|-------|
|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 | 박사 | 8년 | 4년 | - | - |
| | 석사 | 12년 | 8년 | 4년 | - |

비고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4의2] <개정 2021. 4. 26>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18조제5항 관련)

| 구분 | 계급 | ·지방연구직·지도 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연구직·지도 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 목에 해당하는 연 구관 | ·지방연구직·지도 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 목에 해당하는 연 구관 | ·지방연구직·지도 직 규정 별표 2의 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 당하는 지도관 | ·연구사 및 지도사 |
|----------|----|--|---|---|---|------------------|
| 연구 경력 | 박사 | 8년 | 4년 | - | - | - |
| | 석사 | 12년 | 8년 | 4년 | - | - |

비 고 :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별표 15] <개정 2021. 4. 26>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 시 전직시험 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22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 연 구 직 | | 기 술 직 | |
|---------|---------|---------|---------|
| 직 렬 | 직 류 | 직 렬 | 직 류 |
| 공 업 연 구 | 기 계 | 공 업 | 일 반 기 계 |
| | | | 농 업 기 계 |
| | 기 계 운 전 | | |
| | 전 기 | | 일 반 전 기 |
| | 전 자 | | 전 자 |
| | 금 속 | | 금 속 |
| | 섬 유 | | 섬 유 |
| | 화 공 | | 화 공 |
| | 화 학 | | - |
| 물 리 | - | | |
| 농 업 연 구 | 작 물 | 농 업 | 일 반 농 업 |
| | | 농 촌 지 도 | 농 업 |
| | 농 업 환 경 | 농 업 | 일 반 농 업 |
| | | 농 촌 지 도 | 농 업 |
| | 작 물 보 호 | 농 업 | 일 반 농 업 |
| | | 농 촌 지 도 | 식 물 검 역 |
| | 농 업 경 영 | 농 업 | 농 업 |
| | | 농 촌 지 도 | 농 업 경 영 |
| | 산 업 곤 충 | 농 촌 지 도 | 잠 업 |
| | 원 예 | 농 업 | 일 반 농 업 |
| | | 농 촌 지 도 | 농 업 |
| | | | 원 예 |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연 구 직 | | 기 술 직 | | |
|--------|------|-------|------|------|
| 직 렬 | 직 류 | 직 렬 | 직 류 | |
| 농업연구 | 생명유전 | 농업 | 일반농업 | |
| | 농촌생활 | 농업 | 일반농업 | |
| | | 농촌지도 | 농촌사회 | 농촌생활 |
| | 축산 | | 농업 | 축산 |
| | | 농공 | 농촌지도 | 축산 |
| | 공업 | | 농업기계 | 농업토목 |
| | | | 시설 | |
| 농촌지도 | 농업토목 | | | |
| 녹지연구 | 임업경영 | 임업 | 전직류 | |
| 수의연구 | 수의 | 수의 | 수의 | |
| | | 수의 | 수의 | |
| 해양수산연구 | 해양환경 | 환경 | 수질 | |
|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
| | | 어촌지도 | 어촌 | |
| | 수산자원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
| | | 어촌지도 | 어촌 | |
| | 수산양식 | 어촌지도 | 어촌 | |
| | 수산공학 | 해양수산 | 어로 | |
| | | 어촌지도 | 어촌 | |
| 수산가공 | 어촌지도 | 어촌 | | |
| 수산경제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 |
| | 어촌지도 | 어촌 | | |
| 보건연구 | 의학 | 의무 | 일반의무 | |
| | | | 치무 | |
| | 약학 | 약무 | 약무 | |
| 공중보건 | 보건의 | 보건의 | 보건의 | |
| |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 환경연구 | 환경 | 환경 | 전직류 | |
| 시설연구 | 토목 | 시설 | 일반토목 | |
| | | | 농업토목 | |
| 방재안전연구 | 안전관리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
| | | | 재난관리 | 방재안전 |

2. 지도직공무원

| 지 도 직 | | 기 술 직 | |
|---------|---------|---------|---------|
| 직 렬 | 직 류 | 직 렬 | 직 류 |
| 농 촌 지 도 | 농 업 | 농 업 | 일 반 농 업 |
| | | 농 업 연 구 | 작 물 |
| | | | 작 물 보 호 |
| | | | 농 업 환 경 |
| | | | 농 업 경 영 |
| | 원 예 | | |
| | 농 업 경 영 | 농 업 연 구 | 농 업 경 영 |
| | 임 업 | 녹 지 | 전 직 류 |
| | | 녹 지 연 구 | 임 업 |
| | 조 경 | 농 업 연 구 | 산 업 곤 충 |
| | | | 원 예 |
| | 축 산 | 농 업 | 축 산 |
| | | 농 업 연 구 | 축 산 |
| | 가 축 위 생 | 수 의 | 수 의 |
| | | 수 의 연 구 | 수 의 |
| | 농 촌 사 회 | 농 업 연 구 | 농 촌 생 활 |
| | 농 업 기 계 | 공 업 | 농 업 기 계 |
| | | 농 업 연 구 | 농 공 |
| | 농 업 토 목 | 시 설 | 농 업 토 목 |
| | | 농 업 연 구 | 농 공 |
| 농 촌 생 활 | 농 업 연 구 | 농 촌 생 활 | |
| 어 촌 지 도 | 어 촌 | 해 양 수 산 | 일 반 수 산 |
| | | | 어 로 |
| | | 해양수산연구 | 전 직 류 |

[별표 16]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27조제1항 관련)

| 계 급 | 연 구 직 | 지 도 직 |
|-----|--|---|
| 2 급 | [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 3 급 |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
| 4 급 | [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 [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
| 5 급 | 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 | 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
| 6 급 |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 7 급 |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 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
| 8 급 | | |
| 9 급 | | |

비고 : [별표 2], [별표 2의 2]는 각각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7] <개정 2021. 4. 26>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제27조제2항 관련)

| 구분 | | 상당 계급 | | | | | |
|---|------------------------------------|-------------------------|------------------------------------|------------------------------------|----------------------------------|--|--|
| |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일반직 |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 | 연구관 지도관 | 연구사 지도사 | | | |
| 임기 제 공 무 원 | 일반임기제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국가)전문 임기제 | “가급”으로 제직할 기간 | “나급”으로 제직할 기간 | “다급”으로 제직할 기간 | “라급”으로 제직할 기간 | “마급”으로서 “라급” 봉급한계액의 6월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제직할 기간 | “마급”으로서 “라급” 봉급한계액의 6월 이하의 봉급을 받고 제직할 기간 |
| | (지방)전문 임기제 | “가급”으로 제직할 기간 | “나급”으로 제직할 기간 | | | | |
| | 한시임기제 | | “5호”로 제직할 기간 | “6호”로 제직할 기간 | “7호”로 제직할 기간 | “8호”로 제직할 기간 | “9호”로 제직할 기간 |
| | 시간선택제 임기제 | | “가급”으로 제직할 기간 | “나급”으로 제직할 기간 | “다급”으로 제직할 기간 | “라급”으로 제직할 기간 | “마급”으로 제직할 기간 |
| 전문경력관 | | “가”군 27호봉 이상 | “가”군 26호봉 이하 | “나”군 28호봉 이상 | “나”군 27호봉 이하 | “다”군 28호봉 이상 | “다”군 27호봉 이하 |
| 별정직공무원 | | 4급상당 | 5급상당 | 6급상당 | 7급상당 | 8급상당 | 9급상당 |
| 경찰공무원 | | 총경 | 경정 | 경감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 소방공무원 |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 | | 지방소방정 | 지방소방령 |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 지방소방장 | 지방소방교 | 지방소방사 |
| 군인 |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준위 | 원사·상사 ·중사 | 하사 |
|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 (특정직, 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 |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교육공 무 원 |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 | | 부교수 | 조교수 | 전임강사 | | |
| | 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 24호봉이상 | 16-23호봉 | 12-15호봉 | 11호봉이하 | |
| | |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 대학: 17-23호봉 전문대학: 19-25호봉 | 대학: 11-16호봉 전문대학: 13-18호봉 | 대학: 7-10호봉 전문대학: 9-12호봉 | 대학: 6호봉이하 전문대학: 8호봉이하 | |
| 판사·검사 | | 4-2호봉 | | | | | |

[별표 18]

겸임예정 직급 기준표(제31조 관련)

| 임용예정 계급 | | 2 급 · 연구관· 지도관 | 3 급 · 연구관· 지도관 | 4 급 · 연구관· 지도관 | 5 급 · 연구관· 지도관 | 6 급 · 연구사· 지도사 | 7 급 · 연구사· 지도사 | 8 급 | 9 급 |
|--------------------|---------------------------------------|----------------|----------------|----------------|-----------------------|----------------|----------------|-----|-----|
| 교육공무원 |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사립학교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원 포함) | 교수 | 교수 부교수 | 부교수 조교수 | 조교수 전임강사 (2년이상) | 전임강사 | | | |
| | 고등학교 | | | 24호봉 이상의 교원 | 16호봉 이상의 교원 | 12호봉 이상의 교원 | 11호봉 이하의 교원 | | |
|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 | | 이사 (3년이상) | 이사 | 부장 | 과장 (차장) | 계장 (대리) | 평사원 (3년이상) | 평사원 | 원 |

[별표 19] <개정 2024. 1. 29>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30조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 직렬 \ 계급 | 5 급 | 6급·7급 | 8급·9급 |
|--------------------------|---|--|--|
|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 전 산 |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 <기사> 정보처리, 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 정보처리,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전자계산기 제어 |
| 사 서 | 1급 정사서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공 업 (일반기계) | 운송용조종사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전기응용, 전자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소음진동, 산업기계설비, 산업계측제어,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조선, 기계 |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기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조선,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계설계, 에너지관리, 품질경영, 전파전자통신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 용접, 금형제작, 관금제관, 배관, 전자기기, 통신설비, 가스, 전기 |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기계정비, 농업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교통,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철도운송, 관금제관, 배관, 전파전자통신, 에너지관리, 품질경영, 전자계산기제어 |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렬 | 계급 | 5 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공 업 (일반전기) | |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 전기안전, 전자응용, 원자력발전, 방사선 관리, 소방, 품질관리, 산업 계측제어, 컴퓨터시스템응용, 철도신호, 전기신호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기사> 전기, 산업안전, 송강기, 전자,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원자력,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능장> 전자기기, 전기 | <산업기사> 전기,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송강기, 전자, 품질경영, 전자계산기제어,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 공 (금 속) | 업 속) | <기술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품질관리 | <기사>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 <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 공 (섬 유) | 업 유) | <기술사> 섬유, 품질경영, 의류 | <기사> 산업안전, 섬유, 품질경영, 의류 | <산업기사>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섬유, 품질경영 |
| 공 (화 가) | 업 공 스) | <기술사>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식품, 화공, 품질경영 | <기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화학분석 <기능장> 위험물, 가스 |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산업안전, 가스, 식품, 위험물, 품질경영 |
| 공 (자 업 원) | 업 원) | <기술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자원관리, 응용지질, 광해방지 | <기사> 광산보안, 화약류 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 <산업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
| 농 (일반농업) | 업 |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 종자, 식물보호, 식품, 시설원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토양환경 |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립토양평가관리 |

| 직렬 | 계급 | 5 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농 (축 업 산) | | 수의사 <기술사> 축산, 식품 | <기사> 축산, 식품 | 가축인공수정사 <산업기사> 축산, 식품 |
| 녹 지 | | <기술사>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시설원예, 자연환경관리 | <기사>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 물보호, 조경, 시설원예, 자연생태복원, 임산가공, 토양환경 | <산업기사> 종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임산가공, 농 림토양평가관리 |
| 수 의 | | 수의사 | | |
| 해양 (수 산 업 산) | | <기술사>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식품, 어로, 수산제조 |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식품, 수질환경, 어업생산관리, 항로표지, 수산제조 |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항로표 지, 수질환경, 식품, 어로 |
| 해양 (선 박 업 산) | | 1·2급항해사, 1·2급기관 사 <기술사> 기계제작, 조선, 산업기계 설비, 기계 | 3·4급 항해사, 3·4급 기 관사 <기사> 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 5·6급 항해사, 5·6급 기관 사 <산업기사> 조선, 항로표지, 컴퓨터응용 가공 |
| 보 건 |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 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 사, 약사, 한약사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 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 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 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 사, 임상심리사 1급, 응급 구조사 1급 <기사> 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 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광해방지, 인 간공학 |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 사 2급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 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 기물처리, |
| 식품위생 | | <기술사> 축산, 식품, 포장, 방사선 관리, 품질관리 | 영양사, 위생사 <기사> 축산, 식품, 포장, 품질경 영, 수산제조 | <산업기사> 축산, 식품, 포장, 품질경영 |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렬 \ 계급 | 5 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의료기술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기술사> 방사선관리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응급구조사 1급 <기사> 의지·보조기, 의공 | 응급구조사 2급 <산업기사> 의공 |
| 의 무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 |
| 약 무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 간 호 | | 간호사, 조산사 | |
| 보건진료 | | 간호사, 조산사 | |
| 환경 | 의사, 약사, 수의사, <기술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 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화공,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 위생사 <기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화공, 산림,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광해방지 | <산업기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자연생태복원 |
| 항공 | 운송용조종사 <기술사> 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기사> 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 자가용조종사 <산업기사> 항공, 정보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

| 직렬 \ 계급 | 5 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시 설 (도시계획) | 건축사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 <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방재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교통 |
| 시 설 (토목, 수도토목) |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 <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방재 |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시 설 (건축) | 건축사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시 설 (지적) | <기술사>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사>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산업기사>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시 설 (측지) |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시 설 (교통) | <기술사> 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 <기사> 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안전 | <산업기사> 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렬 \ 계급 | 5 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방재안전 | <p><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p> | <p><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p> <p><기능사>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제시공</p> | <p><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p> |
| 방송통신 (통신사) | <p><기술사> 정보통신,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p> | <p><기사> 정보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파전자통신</p> <p><기능장> 전자기기, 통신설비</p> | <p><산업기사>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제어</p> |
| 방송통신 (통신기술) | <p><기술사> 정보통신,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p> | <p><기사> 정보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파전자통신</p> <p><기능장> 전자기기, 통신설비</p> | <p><산업기사>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제어</p> |
|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술) | <p><기술사> 정보통신,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p> | <p><기사> 정보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파전자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p> <p><기능장> 전자기기, 통신설비</p> | <p><산업기사>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제어</p> |
| 위생 | | <p>위생사, 영양사</p> <p><기술사> 식품, 축산, 포장, 품질경영</p> | <p><기능사> 환경</p> <p><산업기사> 식품, 축산, 포장, 품질경영</p> |
| 조리 | | <p><기사> 식품, 축산, 포장, 품질경영</p> | |

| 직렬 \ 계급 | 5 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시설관리 | | <p><기능장> 전기</p> <p><기사> 전기,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공사</p> | <p><산업기사> 전기,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공사</p> <p><기능사> 전기, 기계정비, 조경</p> |
| 토목운영 | | <p><기술사>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 및 지반</p> <p><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p> | <p><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
| 건축운영 | | <p>건축사</p> <p><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p> <p><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 <p><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렬 \ 계급 | 5 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통신운영 | | <p><기술사> 정보통신</p> <p><기사>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p> <p><기능장> 통신설비, 전자기기</p> | <p><산업기사>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전파전자통신</p> |
| 전화상담 | | | |
| 전기운영 | | <p><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철도신호, 전기신호</p> <p><기사> 전기, 산업안전, 소방설비 <전기분야>, 승강기, 품질경영, 철도신호, 전기신호</p> <p><기능장> 전기</p> | <p><산업기사> 전기, 산업안전, 소방설비 (전기분야), 승강기, 품질경영, 철도신호, 전기신호</p> |
| 기계운영 | | <p><기술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기계, 산업기계설비, 품질경영</p> <p><기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치공구설계, 용접,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기계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에너지관리, 품질경영</p> <p><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 <p><산업기사>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기계정비, 농업기계,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철도운송, 판금제관, 배관, 품질경영</p> |
| 열관리 | | | |

| 직렬 \ 계급 | 5 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화공운영 | | <기술사>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식품, 화공, 품질경영 <기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기능장> 위험물, 가스 | <산업기사> 화약류 제조, 산업안전, 가스, 식품, 위험물, 품질경영 |
| 가스운영 | | <기술사> 가스, 화공안전, 화공 <기사> 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 가스, 위험물 | <산업기사> 가스, 위험물 |
| 선박항해 운 영 선박기관 운 영 | |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기술사> 기계제작, 조선, 산업기계 설비 <기사> 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산업기사> 조선, 항로표지, 컴퓨터응용 가공 |
| 농림운영 | | <기술사> 종자, 산림, 축산,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종자, 식물보호, 축산, 식품, 산림, 바이오화학제품 제조, 임업종묘 | <산업기사> 종자, 산림, 식물보호, 축산, 조경, 식품 |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렬 \ 계급 | 5 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보건운영 | |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2. 연구사

| 직렬 \ 계급 | 연구사 |
|--------------|---|
| 공업연구 | <p><기술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재료, 금속가공, 비파괴검사, 세라믹,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자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의류,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포장, 식품, 화공, 산업계측제어, 조선, 섬유,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경영, 기계, 산업기계설비, 표면처리, 금속제련, 자원관리, 철도신호, 전기신호</p> <p><기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치공구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화약류제조, 화공, 전기,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의류, 광산보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소방설비, 섬유, 화약류관리, 제품디자인, 원자력,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가스,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계설계, 전파전자통신,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정비, 광학, 승강기, 철도신호, 전기신호</p> |
| 농업연구 | <p>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p> <p><기술사> 종자, 농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시설원예, 섬유</p> <p><기사> 종자, 식물보호,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시설원예, 섬유,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토양환경</p> |
| 농업연구 (축산) | <p>수의사</p> <p><기술사> 축산, 식품, 폐기물처리</p> <p><기사> 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
| 농업연구 (농공) | <p><기술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경영, 기계, 산업기계설비</p> <p><기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기계설계</p> |
|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 <p>영양사, 위생</p> |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렬 \ 계급 | 연 구 사 |
|-----------------|---|
|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 <p><기술사> 식품, 축산, 농화학</p> <p><기사> 식품, 축산,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
| 녹지연구 | <p><기술사>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임산가공</p> <p><기사>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조경, 산림, 임산가공, 토양환경</p> |
| 해양수산연구 | <p><기술사>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식품, 어로, 수산제조</p> <p><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수질환경, 식품,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
| 보건연구 | <p>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위생사, 영양사</p> <p><기술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p> <p><기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p> |
| 환경연구 | <p>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p> <p><기술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화공,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화공, 산림, 기상,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광해방지</p> |
| 시설연구 (토목) | <p><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p> |
| 시설연구 (건축) | <p>건축사</p> <p><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p> <p><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
| 방재안전연구 | <기사> 방재 |

3. 지도사

| 직렬 \ 계급 | 지 도 사 |
|---------|--|
| 농 촌 지 도 | <p>수의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1·2급, 위생사, 영양사, 생산기사 2급 (1993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p> <p><기술사> 종자, 산림, 축산,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시설원예, 섬유, 의류, 산업위생관리, 기계, 산업기계설비, 수질관리, 임산가공</p> <p><기 사>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시설원예, 산림, 섬유, 의류, 산업위생관리, 기계설계, 수질환경,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산가공</p> |
| 어 촌 지 도 | <p><기술사>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어로, 식품, 수산제조</p> <p><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수질환경,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산제조</p> |

비고 :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4.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 구 분 | 가산점 |
|----------------------------------|------|
|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0.50 |
|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0.25 |

5.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 가점

| 외국어 | 어학능력검정시험 | | 성적별 평정점 | | |
|-------------|-------------------------------------|---------------|---------|---------|---------|
| | | | 0.25점 | 0.20점 | 0.15점 |
| 영 어 | TOEFL | IBT (120점) | 97점 이상 | 84점 이상 | 75점 이상 |
| | TOEIC | | 890점 이상 | 790점 이상 | 700점 이상 |
| | TEPS (2018.5.12. 이후 실시된 시험) | | 460점 이상 | 370점 이상 | 310점 이상 |
| |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 SNULT | 91점 이상 | 81점 이상 | 71점 이상 |
| | | FLAT | 78점 이상 | 72점 이상 | 66점 이상 |
| FLEX | | 1C등급 이상 | 2B등급 이상 | 2C등급 이상 | |
| 중국어 | 중국국가한반 자격 HSK | | 4급 이상 | 3급 | - |
| 그 밖의 외국어 |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 SNULT | 91점 이상 | 81점 이상 | 71점 이상 |
| | | FLAT | 78점 이상 | 72점 이상 | 66점 이상 |
| | | FLEX | 1C등급 이상 | 2B등급 이상 | 2C등급 이상 |
| 한 자 | 국가공인 한자능력검정 | | 3급 이상 | 4급 | 5급 |

비고 : 개인별 1개 언어만 인정하고, 외국어 시험성적 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인정한다.

[별표 20] <개정 2024. 1. 29>

근무경력 가산점(제30조의2 관련)

| 구분 | 부여기준 |
|---|--|
| <p>「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 제2항의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 (최초에 한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의 인사교류자에 대하여 가점(월 0.1점, 최대 2.4점) 부여 • 개인의 희망이나 귀책사유로 1년 이내(합산한 교류기간을 포함) 복귀 시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해당 직급 전 기간 적용 |
| <p>「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초과 ~ 4년 이하 : 1개월당 0.1점 • 4년 초과 ~ 5년 이하 : 1개월당 0.12점 • 5년 초과 : 1개월당 0.15점 • 최대 2.4점 |
| <p>「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가점(1개월마다 0.05점, 최대 0.75점) 부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법」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0.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11. 「풍수해보험법」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가축전염병 예방법」 1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 3. 14>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 | | | | |
|--------|----------------------------|-----------------------|----------|------|
| | | ③ 응시연도 및 회수 ()년도 제 회 | | |
| ※등록번호 | 제 회 번 | 응시번호 | 번 | |
| ※ 급 | 직 | 직 급 별 | 급 직 | |
| ① 성 명 | (한글) | ② 생년월일(만 세) | ※ 등록심사 | |
| | (한문) | | 사진대조 | 서류심사 |
| | (영문) | | ① | ① |
| ④ 주 소 | | | (사진부착) | |
| ⑤ 연락처 | 전화번호 : | | | |
| | 휴대폰 : | | | |
| ⑥ 병역 |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 | | |
| ⑦ 학 력 | | | | |
| 부터 | 까지 | 학 력 | 전공·부문·과목 | |
| | | | | |
| | | | | |
| | | | | |
| ⑧ 자격면허 | | | ⑨ 상 별 | |
| 연월일 | 종 별 | 연월일 |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⑩ 경 력 | | | | |
| 부터 | 까지 | 경 력 사 항 | | 발령청 |
| | | | | |
| | | | | |
| | | | | |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①
비상연락처

| 관계 | 성 명 | 연락처 | |
|----|-----|-----|--|
| | | | |
| | | | |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 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광명시장 귀하

임용 후보자 등록 요령(등록원서 이면)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 | | | |
|---|---|-----|----|
| 년 | 월 | 일부터 | |
| | | | 일간 |
| 년 | 월 | 일까지 | |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 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 발행 관계증명서 1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 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생 년 월 일 ... 생년월일 및 만나이를 기재한다.
-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 ⑨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 ⑪ 비 상 연 락 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임용 후보자 명부

| ① 등록 번호 | ② 등록 연월일 | ③ 성 명 | ④ 생 년 월 일 | ⑤ 성 별 | ⑥ 현 주 소 | ⑦ 최 종 출 신 학 교 명 | ⑧ 특 기 | ⑨ 병 역 필 미 필 | ⑩ 희 망 기 관 | ⑪ 신원조사 | | | | | ⑫ 추 천 | | | | | ⑬ 임 용 | | | 비 고 | | | | |
|---------------|----------------|-------------|-----------------------|-------------|------------------|--------------------------------------|-------------|----------------------------|-----------------------|--------|--------|--------|-------------|-------------|-------------|-------------|-------------|-------------|--------|------------------|--|--|--------|--|--|--|--|
| | | | | | | | | | | 의 뢰 | 회 보 | 송 부 | 제 1 회 | 제 2 회 | 제 3 회 | 제 4 회 | 제 5 회 | 연 월 일 | 직 명 | 근 무 관 서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 서식]

공무원 임용 후보자 임용통보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무원 임용 후보자 임용 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 임용 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계 급 | 직 렬 | 추천인원수 | 임 용 자 수 (임용예정자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1. 임용자 명단 1부
-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 3. 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끝.

(발 신 기 관 명) 직인

수신자

기안자 담당 과장 국장 전결
 협조자
 시행 0000과- (. .) 접수 ()
 우 000-000 기관 주소 /http://
 전화 000)000-0000 / 전송 000)000-0000 / e-메일주소 /공개여부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1. 임용자 명단

| 등록번호 | 성명 | 임용연월일 | 임용직급 | 임용직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02-1-10A 1969. 12. 3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0g/m²

2. 임용불응자 명단

| 등록번호 | 성명 | 임용불응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0202-1-11A 1969. 12. 3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0g/m²

[별지 제4호 서식]

실무수습 계획서

| | | | | | | | |
|------|-----------------------|---------------------------|--------------------------|--------|--------|------------------------|-------|
| 성 명 | | 성별 | 남·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주 소 | |
| 시험구분 | ()직 계 회 5급 공무원 시험 | | | 합격일자 | 년 월 일 | 유효기간 | 년 월 일 |
| 학 력 | | | | 경 력 | | | |
| 임용상황 | 임용일자 | 임용부서 | 시보기간 | 시보단축기간 | 시보단축사유 | 보직부여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개월간) 년 월 일 | 월 | | 일자 : 년 월 일 직위 : | |
| | 배치부서 | | | | | | |
| 수습계획 | 수 습 계 획 기 간 | . . . ~ . . . (일간) | | | | | |
| 수습실적 | 실 지 수 습 기 간 | . . . ~ . . . (일간) | | | | | |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7. 11. 30>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 | | | |
|---------------------------------|---------------------------------|-------|------|
| 필 적 감 재 정 용 란 |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 직렬(류) | |
| | 본인필적 : | 응시번호 | |
| | | 성명 | (한글) |
| 생년월일 | - | | (한자) |

| 평 정 요 소 | 위 원 평 정 | | |
|--------------------|-------------|---|---|
| | 상 | 중 | 하 |
|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 |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 |
|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
|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
| 계 | 개 | 개 | 개 |
| 위 원 서 명 | 성 명 (서 명) | | |

| | | | |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 | 우 수 | |
| | 판 정 | 보 통 | |
| | | 미 흡 |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 | 담 당 확 인 |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5. 12. 11>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 | | | |
|--------------------------------------|---------------------------------|-------|------|
| 필 기 감 재 성 정 용 관 |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 직렬(류) | |
| | 본인필적 : | 응시번호 | |
| | 생년월일 | - | 성명 |
| | | | (한자) |

| 평 정 요 소 | 위 원 평 정 | | |
|--------------------|-------------|---|---|
| | 상 | 중 | 하 |
|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 |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 |
|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
|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
| 계 | 개 | 개 | 개 |
| 위 원 서 명 | 성 명 (서 명) | | |

| | | | | |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 | 판 정 | 합 격 |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 | | 불합격 | |
| | | 담 당 확 인 | |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1. 4. 26>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순 위 | | | 소 속 | 성 명 | 총 평 정 점 | 점수산출내역 | | |
|--------|----|----|--------|--------|------------------|------------------------------|------|-------------------------|
| 최초 | 조정 | 조정 | | | |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 | 시험성적 |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
| | | | | | | | | |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1. 4. 26>

실적가산점 심의신청서

| 소 속 | 직급 | 성명 | 가산점분야 | 실적기간 | 가산점부여사유 | 비고 (증빙자료 목록) |
|-----|----|----|-------|------|---------|-----------------|
| | | | | | | |

위와 같이 실적가산점 부여 심의를 신청합니다

부서장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